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

기 관 명 충청남도 예산군

내 용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, 가로수를 옮겨심기, 가로수의 제거,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승인절차, 승인기간,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¹⁾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산림소유자,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, 국유림영림단을 제외하고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의 조성·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「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자와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충청남도 예산군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도시

1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2005.8.4.부터 시행

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를 제정하였으나, 같은 조례 제20조에 수목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업무를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·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, 「산림조합법」 제46조와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도시림 등의 관리사업은 산림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산림소유자, 산림사업법인,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시행하되 예외적으로 조경공사업자,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 등 조성으로 등록된 법인도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예산군수는

[시정] 「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제20조 수목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업무에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 등 조성으로 등록된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.